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032 제출연월일: 2024. 6. 2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 여 종전에는 시·도지사가 관리·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'보고'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'통 보'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4제5항 중 "보고"를 각각 "통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4(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	제5조의4(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
계의 설치) ① ~ ④ (생 략)	계의 설치) ① ~ ④ (현행과 같
	승)
⑤ 시・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	⑤
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	
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	
게 <u>보고</u>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	<u>통보</u>
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	<u>통보</u>
게 통보하여야 한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